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018. 1. 2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월 17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8년 1월 18일(목)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5. 개정이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정원을 정비하고, 구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6.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17.12.31.)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413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안 제2조, 별표 3)

- 본청 일반직 5급 정원 1명 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및 구의회 5급 정원 조정

(안 별표 2, 3)

- 별정직 직급별 비율 조정

- 5급상당 이상 50% 이내, 6급상당 25% 이내, 7급상당 25% 이상

- 구의회 별정직 5급 상당 1명 감 → 일반직 5급 1명 증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이 만료('17.12.31.)됨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감하여 정원의 총수를 1,413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하고,

- 별정직 직급별 비율을 5급 상당은 당초 60%에서 50%로 줄여 전문위원 직급을 당초 별정직 5급 상당 2명에서 별정직 5급 상당 1명, 일반직 5급 1명으로 조정하며,

- 별정직 6급 상당은 당초 0%에서 25%로, 별정직 7급 상당은 당초 40%에서 25%까지 조정하여 의장비서 직급을 별정직 7급 상당에서 별정직 6급 상당으로 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전문성 제고 및 집행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